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2.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의회운영위원회)

가. 제안이유

국내경제 침체로 인한 제천지역 경제의 어려움과 물가인상, 일자리 감소와 실업 증가로 인한 인구 감소 요인을 해소하고자 지역업체에 각종 공사의 하도급을 유도하고 지역물품구매와 기업유치지원 및 재래시장활성화 대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회의규칙 제19조와 제28조 규정에 의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특별 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주요골자

- 위원수는 7인이내로 한다.
 -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10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 지역실물 경제침체로 인한 주민생활의 어려움과 물가인상, 일자리 감소와 실업 증가로 인한 인구 감소 요인을 해소하고자 지역업체에 주민채용과 시·발주 각종 공사의 지역업체 하도급 시행을 유도하고
 - 지역생산품 구매와 기업유치 지원 및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우수

농산물 생산 및 판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추진과 시민의 의견 및 기업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경기부양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기관에 대안제시 및 시행을 촉구하여 지역경제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상학)

○ 본 의안은 2009.7.14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으로 발의 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66조제2항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위원회의 제안)에 의거 2009.7.14일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위원장이 적정하게 발의하였으며

○ 법률적인 검토사항

-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제2항 및 제66조(의안의 발의) 제2항에 의거하여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 동법시행령 제39조 제40조 제41조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의한 조사특위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규로 되어 있어 절차를 준용하여야 할 사항이며
-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특별위원회)에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때는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2항 및 제56조(위원회의 제안)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으로 기타의안을 제출할 수 있음.
- 지방자치법 해석상 포괄적인 특위는 바람직 못하다는 의견이나 현실적으로 타 자치단체 의회에서 포괄적인 특위를 설치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법률적인 규제 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음.

○ 행정적인 검토사항

- 지방자치법 및 제천시의회 조례에 의거 특정한 사안에 대한 조사 계획서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 발의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 특위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설정할 경우 해당 상임 위원회의 활동제한과 업무 경합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을 유의하여 결정하고 심사하여야 하겠음.
- 특위의 명칭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로 하는 것이 적합하며 운영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감안하여 4. 30까지 결과보고를 마치고 종료하는 것이 타당 하며 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수를 감안하여 7명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겠음.
- 특별위원회 보조 공무원은 전례와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소관업무 상임위원회에서 전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 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없 음 ”

5. 소수 의견

“ 없 음 ”

6. 토론요지

“ 없 음 ”

7. 심사 내용

“원안가결”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심사보고 불임서류

1.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